

독일에 있어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민법전 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Civil Code Provisions in connection with Travel Contract in Germany

김 성 욱*
Kim, Sung-Wook

목 차

- I. 서 론
- II.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 III. 독일 여행계약법의 형성과정
- IV. 결 론

국문초록

최근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선용의 방법으로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9년 해외여행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한이 폐지된 이후에 국외여행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여행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하나는 개별여행이고 다른 하나는 패키지여행이다. 전자는 여행자가 직접 여행계획과 운송수단 등을 마련하여야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후자와 같은 여행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논문접수일 : 2011. 4. 1

심사완료일 : 2011. 4. 29

게재확정일 : 2011. 4. 29

* 법학박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이를 독일에서는 총괄여행이라고 한다. 패키지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의 대중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패키지여행에 있어서 여행주최자는 여행을 실행하면서 여행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에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여행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여행계약과 관련한 규율방식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독일의 경우에 여행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형식을 민법전으로 채택한 입법배경과 형성과정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여행계약의 입법방향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주제어 : 여행, 여행계약, 총괄여행, 여행주최자, 여행자

1. 서론

국민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생활 또는 생활의 재충전의 방법도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 여행의 증가이다. 최근에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계약상의 급부를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행자의 경우에는 여행대금을 미리 선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급부가 불완전하게 이행되거나 급부중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여행의 증가에 상응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행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규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여행계약법을 제정하여 여행자와 여행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직접 규율하거나,¹⁾ 또는 여행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특

1) 독일은 여행계약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장기간 동안 집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1979년에 여행계약을 민법상의 「도급과 유사한 계약」의 절에 「여행계약(Reisevertrag)」이라는 제목으로 11개 조문을 신설하였다. 그 후 1994년에는 EC의 「포괄여행에 대한 EC준칙」의 영향을

별법인 약관규제법을 통해서 규범통제를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²⁾³⁾ 그런데 여행표준약관은 국민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그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특히 여행계약은 다양한 유·무형의 급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형계약상의 규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적용할 것인지가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전형계약상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우선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행계약상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전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규율하자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다만, 민법전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여행계약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일정한 실익이 있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형식을 민법전으로 선택한 것이 독일이 최초이기 때문이다.

받아서 종전보다 소비자보호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 2) 우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행업 표준약관이 승인되었고, 관련 판례도 집적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판례는 1998년에 있었던 사안이다. 이 판례는 여행계약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여행(포괄여행)에 참가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여행업자 및 국외여행 인솔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판결).
- 3) 여행계약에 대한 주요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선수, "여행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안신재,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노영상, "여행계약 법제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임정엽,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승길, "민법개정(안)의 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최병록, "여행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소비자보호원, 2008; 이선수, "여행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2006; 남윤봉, "민법개정안 '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7집, 한양법학회, 2005; 강신용,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1997. 5; 권순희, "여행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윤구, "여행계약의 연구", 「법학연구」, 제7권 1호, 충북대학교, 1995; 박영복, "도급계약-독일법제상의 도급계약과의 비교고찰", 「외대논집」, 제1집,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서민, "여행계약에 대한 입법 의견", 「민사법학」, 제16호, 한국민사법학회, 1998. 6; 이승길, "여행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의 고찰", 「법학논문집」, 2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II.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1. 여행계약법의 제정 이전

독일에서 여행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본 최초의 판결은 1968년 1월 8일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⁴⁾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행업자는 일정한 기일에 특정한 호텔에서 숙박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여 여행자는 대금지급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여행업자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 여행업자가 약관에서 자신은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중개인에 지나지 않고, 위반·손해 등이 존재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도급계약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대해서 운송수단 및 숙박의 알선을 하고, 여행자가 희망하는 대로 여행을 실행하는 것이 여행계약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여행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중개활동의 결과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중개를 계약으로 한 때에도 중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행업자는 반대급부로서 중개수수료가 아닌 포괄대금을 청구하고, 그에 상응하여 여행의 총체적 실행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행약관 중에서 여행업자에 의한 중개활동의 규정은 여행의 실행에 있어서, 여행자는 개별 급부자에게 제2차적인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의 총체적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호텔,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가능성을 여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여행업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독일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여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계약으로 이해하였고, 그 후의 일련의 하급심 판결도 유사하게 판결하였다.⁵⁾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BGH)도 1972년 11월 30일 판결에서 여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파악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여행계약상의 개별 급부자의 법적 지

4) LG Berlin, MDR, 1968. S. 582.

5) LG München, MDR, 1970. S. 925 ; OLG Nürnberg, NJW, 1973. S. 1004.

위를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로 판단하였다.⁶⁾ 또한 1973년 10월 18일 판결에서는 여행계약에 있어서 중개인 조항을 무효로 평가함으로써,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업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⁷⁾ 이와 관련하여 여행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한 이유에는 여행자가 외국에서 섭의소송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고려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비판하는 견해는 여행계약에 있어서는 다양한 급부의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견해⁹⁾와 여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과 도급의 규정이 결합된 사무처리계약(제 675조) 내지는 도급계약(제 631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독자의 계약이라는 견해가 있었다.¹⁰⁾ 한편, 긍정하는 견해는 포괄여행계약을 독일민법 제 675조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파악하였다.

2. 여행계약법의 제정 이후

여행계약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독자적인 계약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먼저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다양한 급부를 스스로 조합함으로써

- 6) BGHZ 60, 14, 16; E. Wolf, Vertretenmüssen beim Reisevertrag, DB, 1974, S. 465(도급계약이라고 보면 수급인은 일의 완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여행업자는 여행이 결합 없이 종료되는 것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결합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여행자의 계약해제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 7) BGHZ 61, 275, NJW, 1974, S. 37(여행업자가 자기의 이행보조자를 통하여 스스로 급부를 이행하는 외관을 발생시킨 경우에 중개인조항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의 적용이 확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여행계약법이 제정된 후에 제 651조의 a 제 2항에서는 “개별적인 여행급부를 수행할 사람(“급부담당자”)과의 계약만을 알선, 중개한다는 의사표시는 기타 사정으로 보아 표의자가 약정된 여행급부를 자기 책임하에 실행한다는 외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8) 高橋 弘, “西ドイツ旅行契約法の成立過程”, 廣島法學, 5卷 1號, 1981, 68面; 박영복, “독일에서의 여행계약법의 발전”, 민사재판의 재문제(상), 송천이시윤박사화갑논문집, 1995, 415면.
- 9) 이승길,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25면.
- 10) H. Bartl, Reiserecht in: H. Klatt, Recht der Touristik(Gruppe 130) 1977, S. 2 ff., S. 10; 高橋 弘, “西ドイツ旅行契約法の成立過程”, 廣島法學, 5卷 1號, 1981, 68面.

여행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일괄요금의 지급을 여행자로부터 받는 당사자이며, 여행자는 여행업자만을 신뢰하여 그를 계약의 유일한 상대방으로 하여 여행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무처리를 그에게 위임하는 당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자는 여행의 중간과정에서 누가 개별급부를 하게 될 지 알 수 없고, 그와 직접 교섭하거나 청구·소구하는 등의 어려움을 스스로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행계약은 일체의 사무처리를 포함한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¹¹⁾ 한편, 독자적인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여행계약은 여러 가지 개별급부의 총체로 이루어지며, 그 이행이 일정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또한 적시에 하여야 하며, 적시에 이행되지 않은 급부는 추완할 수도 없고,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여행계약의 지속적인 채권관계를 중요시하여 통상의 도급계약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한다.¹²⁾ 또한, 도급계약은 예정된 효용을 가지는 완성된 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만, 여행계약은 여행업자가 이행할 급부의 총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여행의 종료시에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여행계약을 도급계약에 유사한 독자적 계약유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

3. 검토

여행계약은 여행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급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물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물건이 아닌 기타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도급계약은 본질상 일의 완성과 그것의 인수라는 어느 한 시점에서 계약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행계약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행업자가 개별적인 급부를 여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고, 또한 개별적인 급부들이 단순히

11) Medicus, Schuldrecht II, 4. Aufl. 1990. S. 171.

12) K. Larenz, Zur Typologie des Reisevertrages, VerR. 1980. S. 689ff.

13) Brox, a.a.O., Rn. 289a; MK-Tonner, vor § 651a Rn. 15; Palandt-Thomas, 54. Aufl. 1995, Einführung vor § 651a Rn. 2.

시간적으로 연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개별급부들의 총체로서의 여행이 이루어지므로 여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기보다는 도급계약에 유사한 독자적인 계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만약 여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이해한다면, 여행의 완성 이전에 양 당사자이 귀책사유 없이 여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일의 완성 즉, 전체여행에 대한 완전한 급부가 없기 때문에 여행업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여행자에게 발생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완성 전에는 수급인이 위험부담을 지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여행계약의 성질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행계약은 도급계약과 유사한 면은 가지고 있지만 여행계약에 도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독일 민법은 도급계약의 질에 여행계약을 두면서도 그 표제에는 도급계약 및 이에 유사한 계약으로 편제한 것은 여행계약은 도급과 유사하지만 도급계약 그 자체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인 계약으로 본 것이다.¹⁵⁾ 이렇게 여행계약의 급부내용은 서로 다른 다수의 급부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결과인 이들 상이한 부분급부의 실현이 시간적·장소적·기능적으로 전체급부(즉, 여행)와 결부되어 이루어지며, 일의 결과가 개개의 급부 및 그 시간적 연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행계약은 도급계약과 비슷하지만 그 법적 성질은 여행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도급계약에 유사한 독자적인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14)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629면.

15) 독일 여행계약법 제정 당시에 여행계약에서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몇 개의 규정을 도급계약에 보충하는 것으로도 족하고, 새로운 계약유형을 창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연방의회의 법무위원회 소수파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을 낸 소수파도 본질적으로 도급계약 규정만으로 여행계약에 관한 분쟁을 규율할 수 없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충규정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여행자와 제3자의 교체권, 무익하게 보낸 휴가기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 여행 중에 계약을 해제한 여행자를 귀환수송할 여행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감액 및 손해배상청구권, 중개인조항의 무효규정 등이다.

Ⅲ. 독일 여행계약법의 형성과정

1. 입법배경

독일의 경우에 여행계약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⁶⁾ 독일은 1976년에 연방정부가 여행계약법을 특별법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연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민법전에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978년 12월 13일에 연방하원과 1979년 4월 6일에 연방상원의 의결을 거쳐, 1979년 5월 4일에 공포되었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래의 독일 민법은 정보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여행업자의 업무와 관하여 고용계약(제611조), 사무처리계약(제675조), 또는 중개계약(제652조) 등의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포괄여행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민법전에 있는 계약유형 중에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희망에 따라 일을 제작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포괄여행에 있어서는 미리 제작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포괄여행은 보통여행약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여행업자협회(DRV : Deutscher Reiseboroverband e V.)가 장려한 「여행에 관한 보통여행약관(ARB : Allgemeine Reisebedingungen für Pauschalreisen)」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¹⁷⁾ 그런데 여행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은 여행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약관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중개인 조항으로 여행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행자는 여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개개의 급부를 이행할 자(Leistungsträger)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행업자가 매개하려고 하는 급부내용 및 개별 급부자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반면 여행업자는 사실상 여행의 제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16) 독일 여행계약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것을 참고한 것이다. 김형남·이승길, "독일여행계약법의 입법화 과정에 관한 고찰", 「한남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 24, 1994; 김성욱, "여행계약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7) 高橋 弘, "西ドイツ旅行契約法の成立過程", 廣島法學, 5卷 1號, 1981, 66面.

지위를 단지 개개의 급부의 증개인으로 함으로서 증개활동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개개의 급부계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증개인 조항의 효력은 여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73년 판례에서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¹⁸⁾ 1972년 판례도 여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아서¹⁹⁾ 개별 급부자는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로 보았다.²⁰⁾

한편, 현대의 관광여행에서 포괄여행이 차지하는 경제적·사회적 의의의 증대성과 여행업자·여행자 사이의 명확·적정한 이익조정 필요성 특히 계약법의 영역에 있어서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1960년대 초부터 연방사법부는 포괄여행에 있어서 여행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²¹⁾ 이 무렵 로마의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는 1967년 이래 Otto Riese 로잔느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연구위원회에 여행계약에 관한 문제의 검토를 위촉하여 그 검토결과로써 「여행업자의 마그나카르타」²²⁾라고 할 수 있는 「여행계약 및 여행업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정안」을 발표하였다.²³⁾ 이 협정안 제5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독일 여행계약법에 입법화되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70년 4월경에 이 협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브뤼셀에서 여행계약에 관한 외교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독일을 포함한 48개국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4월 23일 「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정」(CCV 브뤼셀 협정)²⁴⁾이 다

18) OLG Köln, NJW, 1972, S. 1815; BGHZ 61, 275, Urt. v. 1973. 10. 18.

19) BGHZ 60, 14, 16, Urt. v. 1972. 11. 30.

20) OLG Köln, NJW, 1972, S. 1815.

21) R. Eberle, Neuregelung des Reiserechts durch das Reisevertragsgesetz, DB, 1979, S. 341.

22) O. Riese, Der Entwurf eines internationalen Abkommens über den Reisevertrag und die Haftung der Reisebüros, RabalsZ 32, 1968, S. 651, 685; 古瀬村邦夫 譯, “旅行契約および旅行業者の責任に関する國際條約ニツイテ”, 公法, 第13號, 11面.

23) O. Riese, a.a.O., S. 741 ff (古瀬村邦夫 譯, “旅行契約および旅行業者の責任に関する國際條約ニツイテ”, 公法, 第13號, 15面).

24) 이 해설에 관하여는 E. Rebmann, international Eingetliche des Rechts des Reisevertrages, DB, 1971, S. 1949 ff. 2002 ff.

수결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각국 여행업자협회의 국제적 조직인 세계여행업자협회연맹(UFTAA)은 1971년 10월의 제5차 총회에서 각국여행업자협회에 브뤼셀 협정의 서명과 비준에 반대하도록 각국의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세계여행업자협회연맹(UFTAA)이 브뤼셀 협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증책임을 여행업자에게 전환하고 있는 것, 둘째, 여행업자가 통상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에 관하여도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셋째, 직업적 여행업자와 임시의 여행업자를 차별하고 후자에 보다 유리한 판매조건을 부여하여 편의를 주고 있는 것, 넷째, 직업적 여행업자의 부당한 법적 행동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소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여행업자의 법적 비용지출이 증대된다는 것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독일에서도 여행업자협회의 저항에 의하여 비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브뤼셀 협정을 모델로 하여 새로운 여행계약법의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제1차 참사관 초안

1971년 9월 7일의 연방의회에서 de With는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의 국회의원 5명과 더불어 브뤼셀 협정에 언급하면서 「포괄여행에 있어서 여행자·여행업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소비자보호의 견지에서 충분히 규제되고 있는가?」라는 7개 항목에 걸친 소질문(kleine Anfrage)을 제출하였다.²⁵⁾ 또한 1972년 6월 14일 연방의회 제191회 회의에서 사회민주당(SPD)의 de With국회의원이 재차 질문을 하였다.²⁶⁾ 그 후 1973년 5월 10일 연방의회 제30회 회의에서 사회민주당(SPD) 국회의원 Geßner 및 Hansen의 질문 및 1973년 10월 18일 연방의회에서 사회민주당(SPD)국회의원 Kater의 질문²⁷⁾에 응하여 1973년에 연방사법부는 21개조로 성안된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1차 참사관 초안을 작성하였다.²⁸⁾ 이 초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

25) H. Klatt, Gesetz über den Reisevertrag, 1979. SS. 49 - 53.

26) H. Klatt, a.a.O., SS. 55 - 58.

27) H. Klatt, a.a.O., SS. 59 - 61.

28) 이 제1차 참사관 초안을 개설한 것으로는 B. Schulz, Regelung des Reiserechts Bericht aus

여행계약은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은 절대무효로 한다는 것(제5조 제1항), (2) 여행업자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제3조 제1항), ① 여행자의 계약취소 및 교체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입은 손해 등을 전보할 「여행취소료보험」의 체결의무(제4호), ② 여행자의 비용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을 의무, 여행계약의 해제 또는 급부의 불이용이 있을 때 개별급부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제7항), ③ 여행자가 개별급부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때 여행자를 원조할 의무(제8항)를 정하고 있다. (3) 여행계약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여행자가 교체된 경우에 교체한 여행자가 여행업자의 계약상대방은 아니지만 여행개시 후에는 이 법에 의하여 원래의 여행자에게 속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 (4) 여행대금의 변경(제12조)에 관하여, ① 환시세 또는 운임의 변경으로 여행대금을 인상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계약으로 유보하여야 하고 변경할 때에는 대금산정에 영향이 있을 때에 한할 것(제1항), ② 10%를 넘는 여행대금 인상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여행자에게 도달할 것(제2항), (5) 여행업자가 계약체결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사태 즉 전쟁·파업·내란·전염병 등이 여행 중에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특히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생긴 초과비용은 여행업자의 부담으로 할 것(제8조), (6) 여행업자 및 그 이행보조자가 여행개시 6일전에 대체급부를 필요로 하는 사정을 이미 통지하고 하자없는 대체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여행자는 이 대체급부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제13조 제2항), 당해 하자가 증대한 때에는 계약해지권(제14조 제2항)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금액(제14조 제1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7) 여행자의 구제기간의 설정 및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는 여행업자가 예약한 현지의 승무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제14조 제4항), (8) 여행자의 인적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 여행종료일로부터 30년, 기타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행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것(제18조) 등이다.

Bonn, ZRP, 1973. S. 273ff.

3. 제2차 참사관 초안

1975년 9월 30일 연방사법부는 27개조로 성안된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2차 참사관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 초안은 제1초안에 비하여 소비자보호의 점에서 약간 후퇴한 감이 있다. 그러나 제1차 및 제3차 참사관 초안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 여행계약은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여행업자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여행자에게 교부할 여행확인서에 제1초안의 계약서면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외에 여행중에 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수령하거나 또는 여행자의 의사표시를 전달할 권한 있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사항으로 부가하고(제2조 제2항 제9호), 동시에 72시간 미만의 여행에 대해서는 기재불요사항을 인정하지만 여행자의 청구가 있으면 여행업자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3) 여행업자의 의무로서는 ① 72시간 미만의 여행에 있어서는 여행자의 계약해소(해제·해지), 여행의 불참가, 여행금부의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 기타의 재산적 불이익을 여행자에게 통지할 의무(제4조 제1항), ② 여행자가 여행취소료보험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의무 또는 체결을 증개할 취지를 신고할 의무(제4조 제2항) ③ 여행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위태·침해·불능으로 될 사유가 있을 때 여행자에게 보고할 의무(제3조 제2호) ④ 여행자가 개별급부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여행자를 원조하고 필요한 정보·서류를 제공할 의무(제3조 제5호)를 정하였다. (4) 여행자가 여행개시일 14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의 예정배상액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약정 여행금의 35%로 한다(제11조 제3항). (5) 여행대금의 변경(제19조)에 관하여 ① 환시세 또는 운임의 변경에 따라 여행대금을 인상할 때에는 여행은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개시한다는 것이 부가되었다(제1항). ② 5%를 넘는 여행업자의 분할금청구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여행개시일 2주일 전에 여행자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동시에 계약해제권이 있다는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한 때 유효하다(제2·3항). (6) 여행업자는 전쟁·파업 등의 이상사태에 의하여 계약이 해소된 때 여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대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소요된 초과비용은 2분의 1씩 부담한다(제17조). (7)

여행자는 하자없는 대체급부가 있는 때에도 여행업자가 인식할 증대한 이유에서 대체급부를 이용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제20조 제3항 제2문). (8) 여행업자의 책임(제23조)과 관련하여 이행보조자(개별급부자)가 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배제하는 조항의 효력은 이행보조자(개별급부자)와 여행자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제3항 제2문 및 제3문). (9) ① 여행자의 여행업자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여행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할 것을 요한다(제24조). ② 여행자의 인적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제1차 참사관 초안과 동일하지만 기타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행종료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제25조 제1항) ③ 여행업자가 여행급부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을 한 때에는 여행자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여행업자가 이것을 서면에 의하여 거절하고, 동시에 여행자가 첨부한 증서를 반환할 때까지 정지한다(제25조 제2항 제1문) ④ 여행업자가 청구권의 일부만 인용한 때에는 아직 다툼이 있는 부분의 청구권에 관한 시효가 진행된다(제25조 제2항 제2문).

4. 제3차 참사관 초안

제3차 참사관 초안은 연방정부가 결정한 25개조로 성안된 정부초안으로 1976년 5월 6일에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²⁹⁾ 이 초안과 관련하여 여행업자측은 정부 초안에 대하여 격렬한 저항을 하였다. 1976년 10월 15일 독일 여행업자협회는 여행에 관한 개정 보통여행약관을 경쟁제한금지법(GWB) 제3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비구속적인 협회권고로서 연방교통부에 등록하였다³⁰⁾. 이 초안은 연방의회 제1독회 종료후 법무위원회 및 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심의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그런데 연방 정부는 이 초안을 수정하지 않고 재차 1977년 4월 22일 연방 참의원³¹⁾에 같은 해 7월 27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

29) BT-Dr. 7/5141: V. Petev, Zur Neuregelung des Reiseveranstaltungsvertrags, JZ, 1976, S. 632.

30) 여행업자협회의 1976년 약관 해설에 관하여는 H. Bartl, Reiserecht, 1979, SS. 105~143.

31) BT-Dr. 194/77(1977. 4. 22).

다.³²⁾ 연방참의원은 1977년 6월 3일 제446회 회의에서 재차 정부초안에 대한 거부를 결의하였다.³³⁾ 이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이 법률초안의 개개의 규정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이 걸려있는 주요 사안에 관하여 연방 입법에 공동 참여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는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³⁴⁾ 연방의회는 1977년 10월 6일 제1독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정부·여당은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였다. 즉 제1독회에서 SPD를 대표하는 Schofberger국회의원은 다수의 특별법으로 민법규정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여행계약을 민법 중의 하나의 계약유형으로 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 문제를 법무·경제 양위원회 심의에 붙여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⁵⁾ FDP를 대표하는 Kleinert 국회의원도 이 의견에 찬성하였고, 기독교 민주동맹(CDU)·기독교 사회동맹(CSU)를 대표하는 Henning 국회의원과도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서 여행계약규정을 민법전에 삼입할 것을 법무·경제 양위원회에 제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특별법의 입법은 중단되었다. 이후 정부초안은 다시 1977년 10월 20·21일 독일법관연합의 민사법위원회의 의제로 되었고, 여기에서 작성된 견해가 1977년 11월 10·11일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표되었다. 독일법관연합의 견해를 살펴보면 정부 초안에서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여행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찬성하지만, 현행 민법전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몇 개의 규정을 보충하면 여행계약의 법적 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³⁶⁾ 1978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Trier에서 개최된 독일법관아카데미(Deutscher Richterakademie)의 대회에서도 여행계약법의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계약법의 일부 규정은 도급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다. 둘째, 수년간에 걸쳐 논의되어온 문제의 대부분(여행업자의 중개인조항 등)이 연방재판소(BGH)의 판례

32) BT-Dr. 8/786(1977. 7. 27).

33) BT-Dr. 8/786(1977. 6. 3).

34) BT-Dr. 8/786 Anlage 3: Gegenäußerung der Bundesregierung zur Stellungnahme des Bundesrates.

35) H. Klatt, a.a.O., SS. 182~183.

36) Leonardy, Der neue Entwurf eines Reiseveranstaltungsgesetzes, DRiZ 1978. S. 267.

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셋째, 1979년 4월 1일 시행된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5. 제4초안(Emmerich-Entwurf)

1978년 5월 10일 연방의회법무위원회에 사회민주당(SPD) 국회의원의 이름을 붙인 제4초안(Emmerich-Entwurf)³⁸⁾이 제출되었다. 이 Emmerich초안은 민법전의 개정에 관한 법률초안이란 제목으로 여행계약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초안에 대하여 독일 법관연합상임위원회는 1978년 6월 7일 총회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³⁹⁾ 첫째, 신초안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둘째, 신초안의 전11개 조항중 절반 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서 몇 개의 필요한 조항을 도급계약규정에 삽입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신초안은 여행계약을 도급계약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별은 불합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행급부의 총체는 고용 또는 노무공급에 의하여 발생된 결과(민법 제631조 제2항)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종래의 판례 및 학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넷째, 신초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규정보다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여행업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하는 제651조의 h).

6. 제5초안(Schofberger-Entwurf) · 제6초안(Diskussionspapier)

Emmerich초안에 이어서 1978년 9월 27일 연방의회 법무위원회에서는 동초안의 수정⁴⁰⁾을 목적으로 한 제5초안이 심의의 기초가 되었다.⁴¹⁾ 이 Schofberger초

37) Kastner, Zum Reiseveranstaltungsvertrag, DRiZ 1978. S. 87.

38) Emmerich-Entwurf의 원문은 H. Klatt, a.a.O., SS. 185~188; Rebmann, Regelung des Reiseveranstaltungsvertrags durch Ergänzung des BGB, DRiZ, 1978. SS. 268~269.

39) Leonardy, a.a.O., DRiZ 1978. SS. 268~269.

40) 여행자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을 5만 마르크로 제한하는 것과 여행계약에 관련된 분쟁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 제29조 b로서 삽입하는 것 등이다.

41) H. Klatt, a.a.O., SS. 189~192.

안은 다시 수정을 가하여 1978년 10월 4일 연방의회 법무부위원회에 제6초안 「토른시안(Diskussionspapier): 민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의 초안」으로 제출되었다.⁴²⁾ 이에 대하여 연방의회 소수파인 기독교 민주동맹(CDU)·기독교 사회동맹(CSU) 측은 「Pfennig-Entwurf」을 제출하였다.⁴³⁾ 이 Pfennig초안에도 도급계약과 병행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도급계약규정의 보충과 변경으로 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78년 10월 23일 연방의회 법무위원회는 이상의 초안의 심의를 마치고 다수결로서 민법전의 개정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의결한 후 법무위원회의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을 첨부한 법무위원회의 결의·권고 및 보고를 1978년 12월 4일에 발표하였다.⁴⁴⁾ 이 보고에 의하면 연방의회 법무위원회의 다수파(사회민주당(SPD)·자유민주당(FDP))은 민법규정은 일반적이며, 포괄여행은 개개의 일이 아닌 대중교통의 소산인데도 판례가 형성하여온 현행의 여행계약법리는 포괄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계약유형을 창설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종래의 정부 초안이 제안한 바와 같이 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민법에 의한 규제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법은 광범위한 법의 분산을 발생시켜 효율적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위원회의 소수파(기독교 민주동맹(CDU)·기독교 사회동맹(CSU))은 입법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므로 고유한 계약유형을 창설하는 것은 법해석상의 이유에서 유해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1) 여행자의 제3자의 교체권 (2) 무익하게 소비한 휴가기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권 (3) 여행 중에 계약을 해지한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여행업자의 의무 (4) 불이행에 기한 감액 및 손해배상청구권 (5) 중개인조항의 무효규정을 도급계약법에 보충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하였다.

법무위원회가 결의한 초안은 1978년 12월 13일 연방의회 제2·제3독회(제124회 회의)에서 가결된 후 기독교 민주동맹(CDU)·기독교 사회동맹(CSU)가 다수파를 차지하는 연방 참의원에 회부되었다. 연방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한 결과 불과 5개조로 이루어진 초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42) H. Klatt, a.a.O., SS. 193~196.

43) H. Klatt, a.a.O., SS. 197~198.

44) BT-Dr. 8/2343(1978. 12. 4).

1979년 2월 26일 연방 참의원은 연방의회의 의결 법안을 보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 특히 이 초안 제651조 h규정에 의한 여행업자의 책임제한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붙여서 Bonn기본법 제77조 제2항에 의해 양원협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지만,⁴⁵⁾ 1979년 3월 5일 및 3월 26일의 총회에서 양원협회의는 어떠한 성안도 얻을 수 없었다. 이후 정부안·사회민주당(SPD)작성안에 반대하여 온 여행업자측도 1979년 3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연방참의원은 신초안에 따른다는 태도를 표명하였고, 연방 참의원도 연방의회가 의결한 민법개정안 초안에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⁴⁶⁾ 그 결과 1979년 5월 10일 민법전의 개정 에 관한 법률(여행계약법)이 공포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N. 결론

독일 민법개정 당시에는 포괄여행(Pauschalreise)을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포괄여행에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떠한 판단기준으로 당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되는지, 계약위반의 제재방법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되는지에 관하여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행계약상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노력은 1972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고, 이후 종래의 판례 및 학설을 반영한 입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여행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그 법적 분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여행계약상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민법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전형계약의 규정들이 준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결방법으로는 여행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고 또한 그에 상응한 법적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민법전에 여행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입법방식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

45) BT-Dr. 8/2589(1979. 2. 19).

46) BR-Dr. 80/79(1979. 4. 6).

참고문헌

-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 강신용,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사법행정학회, 1997.
- 김윤구, “여행계약의 연구”, 「충북대학교법학연구」, 제7권 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남윤봉, “민법개정안 ‘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7집, 한양법학회, 2005.
- 박영복, “도급계약-독일법제상의 도급계약과의 비교고찰”, 「외대논집」 제1집,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 박영복, “독일에서의 여행계약법의 발전”, 민사재판의 제문제(상), 송천이시윤 박사화갑논문집, 1995.
- 서 민, “여행계약법에 대한 입법의견”, 「민사법학」, 제16호, 한국민사법학회, 1998.
- 이승길, “민법개정(안)의 여행계약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이승길, “여행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의 고찰”, 「법학논문집」 2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이선수, “여행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2006.
- 최병록, “여행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소비자보호원, 2008.
- 권순희, “여행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8.
- 김성욱, “여행계약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2.
- 노영상, “여행계약 법제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5.
- 이승길,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 이선수, “여행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6.
- 안신재,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5.
- 임정엽,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3.
- E. Rebmann, international Eingetliche des Rechts des Reisevertrages, DB, 1971.
- E. Rebmann, Regelung des Reiseveranstaltungsvertrags durch Ergänzung des BGB, DRiZ, 1978.
- K. Larenz, Zur Typologie des Reisevertrages, VerR, 1980.
- O. Riese, Der Entwurf eines internationalen Abkommens über den Reisevertrag und die Haftung der Reisebüros, RabelsZ 32, 1968.
- R. Eberle, Neuregelung des Reiserechts durch das Reisevertragsgesetz, DB, 1979.
- 高橋 弘, “西ドイツ旅行契約法の成立過政”, 廣島法學, 5卷 1號,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Civil Code Provisions
in connection with Travel Contract in Germany**

Kim, Sung-Wook

Professor,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

Travel is one of the best holiday events as the economy grows and people get more spare time nowadays. Overseas tourists have been increasing specially since the abolition of the partial restriction on overseas travel in 1989. Travel

is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individual travel, the other package travel. In individual one, a traveler makes a plan and decides the way of transport on his own. On the other hand, in package one, a travel agency makes schedules and plans, carries out programs under its responsibility. The latter, called pauschalreise in German, is more popular these days. A travel agency works for the convenience of people by doing any complicated things for travel. It has promoted people's travel activities leading to mass tourism. However the package travel occurs many problem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ravel agencies and travelers. Foreign countries normally have laws on travel contract and some other systems to solve the problems occurred. But unfortunately Korea doesn't have any directly related law. For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I examin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 travel contract related provisions among BGB in Germany. Laws on travel contract in Germany is enacted in 1979. Especially, I examined about Formative Process of laws on travel contract in Germany enacted 1979.

Key Words : Travel, Travel Contract, Pauschalreise, Travel agency, Traveler